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악 거 번 호 제 2024-006-16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4. 3. 27.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징 금 : 613,000,000원
 - 나. 과 태 료 : 3,3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2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신원 미상의 자(이하'해커')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4. 1. 18.)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 23. ~ '24. 2. 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 1. 31.(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 분	항 목	기 간	건 수(건)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24. 1. 12.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24. 1. 15.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확인한 회원 계정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XSS 공격* 코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함.

'24. 1. 16. 내부 직원이 해당 게시글을 열람하면서 직원 계정의 세션정보가 탈취되었고, 해커는 탈취한 세션정보를 이용하여 관리용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원 및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

- 1) (유출 규모 및 항목) 직원 25명, 회원 95,171명의 마스킹된 정보*
- * (직원, 회원 1명) ID, 이름 / (회원) ID, 이름(일부 마스킹), 휴대전화번호(일부 마스킹), 이메일(일부 마스킹)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 시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
'24.1.12. 12:01~12:05	<u>크리덴셜 스터핑 공격</u> 으로 회원 계정(1개) 로그인 성공
'24.1.16. 12:13	서비스 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확인(웹 크롤링)으로 <u>최초 인지</u>
'24.1.16. 12:42, 14:34	공격자 IP 주소 차단(1차, 2차)
'24.1.16. 14:36	관리 서비스 전체 계정 세션 만료 처리(상황 종료)
'24.1.18. 17:31	개인정보 유출신고 완료
'24.1.19. 10:25	1차 유출통지(사이트 팝업, 공지사항, 문자, 이메일) ※ 회원 95,170명
'24.3.3. 10:54	유출통지 완료 (문자, 이메일) ※ 직원 25명, 회원 1명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08. 3.부터 IPS와 Anti-DDoS 장비를, '12. 3.부터 웹 방화벽 장비를, '16. 4.부터 서버 모니터링 도구() 등을 도입하였으나, 웹방화벽의 기본 정책인 XSS 공격 탐지·차단 정책 미적용하여 XSS 공격을 탐지 및 차단하지 못하였고, 페이지에 대한 과도한 접속시도(동일 IP에서 분당 1,000회 이상)가 있었으나 단시간 내 대량의 접속 시도 및 로그인 실패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4. 1. 12. 12:01 ~ 12:05 동안 4,026회의 회원 로그인 시도(실패 : 4,024회, 성공 : 2회(1개 계정))

피심인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16. 4. 16. ~ '24. 1. 16. 동안 해킹 공격(XSS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4. 1. 12. 발생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 1명의 개인정보 (ID, 이름)가 유출된 사실을 '24. 1. 16. 15시경 인지하였고, 이후 분석을 통해 직원 정보도 유출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3. 3.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3.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18.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²(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²⁾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6항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³⁾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피심인이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법적인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에 소홀히 하여, 웹 방화벽에서 XSS 탐지·차단 정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아 XSS 공격을 탐지·차단하지 못하였으며, 페이지에 대한 과도한 접속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16. 4. 16. ~ '24. 1. 16. 동안 해킹 공격(XSS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호법	§30① 3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차단하지 못한 행위(고시§6①)
	호호 §29	§30① 8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응영화 해의(고시86②)

< 피심인의 위반사항 >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피심인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4. 1. 16.경) 하였고, 이후 분석을 통해 직원정보도 유출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4. 3. 3.)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3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함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개인정보 유출통지	보호법	§39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의무 위반	§34①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한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

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관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 '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①전체 매출액				
②관련 없는 매출액				
①에서 ②를 제외한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6. 4. 16. ~ '24. 3. 27.)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1차 조정	③2차 조정	④최종과징금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천 원) •연평균 매출액에 % 적용 (약한 위반*)	•위반기간** 2년 초과 50% 가중 (천 원) •취득이익 없으므로 30% 감경 (천 원)	•시정완료, 조사협력으로 30% 감경 (천 원)	천 원 ^{***}	
⇒ 천 원	⇒ 천 원	⇒ 천 원		

^{*} ①(고의·과실:중)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심인의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5)(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②(부당성:하)

③(개인정보 유형:하)

④(피해규모:하)

^{**} 위반기간 : '16. 4. 16.(온라인 서비스 개편일) ~ '24. 3. 27.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⁵⁾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 만 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ਜ ਦ ਨ ਲ	다기합당	1회	2회	3회 이상
노. 법 제34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 세/5주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자·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 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

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600만 원	-	270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 과태료 산출내역 >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6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모양·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⁶⁾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V.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 2항제17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27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진욱 (서명)

위 원 김진환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

위 원 이문한 (서명)

위 원 조소영 (서명)